

의안번호	2203148
의 퇴 인	박홍배 의원
회 답 일	2024.10.22.
추계번호	24B3176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3조(근로자지원프로그램)(제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국가에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시행을 지원할 수 있음	의무규정
2	안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3항) 3.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아니한 사업주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83조(근로자지원프로그램)(제3항)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우나, 근로복지정책에 관한 선언적인 내용이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2	안 제99조(과태료)	—	• 미대상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되어 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미대상 사유에 해당함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행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는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에 근거하여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복지지원 사업¹⁾의 내역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및 개인의 고충 등 업무저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등을 제공하는 사업임

[표 1]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에 따른 재정사업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내역사업)	2021 결산	2022 결산	2023 예산액	2024 예산액	2025 예산안
근로자복지지원 (기업복지활성화지원)	1,646 (1,239)	1,646 (1,239)	1,564 (1,157)	1,893 (1,151)	1,558 (1,151)

자료: 고용노동부

- 현재 시행 중인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의 사업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임
- 그러나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국가에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시행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 추가재정소요는 개정안의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에 따라 결정됨
 - 만약 개정안에 따른 지원대상이 현행 지원대상(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 수준이거나 그 이하일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개정안에 따른 지원대상이 현재 수준 보다 확대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현시점에서 장래에 추진될 사업의 지원대상과 이로 인한 기존 사업의 확대 규모 및 신규사업의 규모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곤란
- 따라서 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장래의 발생할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나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1) 코드: 3061-301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

참고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 개요

- (사업주체) 근로복지공단
- (사업기간) '10년 ~ 계속
- (사업규모) 1,151백만 원('24년)
- (목적)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등 업무 저해 요인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생산성 증대 도모
- (사업대상)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
- (지원내용) 전문상담사를 통한 온·오프라인 상담 제공(15개 분야, 무상)

[부표 1]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지원내용

상담 분야	상담 종류		제공 방법
①직무스트레스 ②조직 내 소통 ③업무역량 강화 ④불만 고객 응대 ⑤일·가정양립 ⑥직장 내 괴롭힘 ⑦성격 진단 ⑧스트레스 관리 ⑨정서 문제 ⑩건강관리 ⑪대인관계 ⑫자살 ⑬부부 갈등 ⑭자녀 양육 ⑮기타	온라인	게시판 상담	근로복지넷 게시판 이용
		단문 상담	근로복지넷 희망드림톡 이용
		전화상담	유·무선전화 이용
		화상상담	화상상담 앱 이용
	오프라인	1:1 개인상담	공단 및 위탁수행기관 지사(센터), 해당 기업 등에서 대면상담
		집단교육(특강)	해당 기업 또는 협의 장소에서 집단교육 또는 특강
		특화프로그램	진단, 교육, (집단)상담, 체험 등 상담주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 장소에서 진행

자료: 고용노동부

□ 집행절차

	회원가입	상담신청	상담일정 협의	상담진행	만족도 평가
EAP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 or.kr회원가입 (개인 · 기업)	① 상담유형 ② 상담 분야 ③ 상담사 선택	상담사가 전화 연락 상담 일정 협의	온·오프라인 상담 실시 (회당 50분)	상담 이용에 대한 만족도 평가

□ 사업성과 및 실적

[부표 2]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사업성과

(‘24. 8. 31. 기준 / 단위 : 건)

구분		직무 스트레스	조직 내소통	업무 역량 강화	불만 고객 응대	일·가 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	성격 진단	스트레스 관리	정서 문제	건강 관리	대인 관계	자살	부부 갈등	자녀 양육	기타
20년	온라인	391	213	11	10	13	814	30	156	312	5	98	24	114	53	24
	오프 라인	2,084	549	280	41	74	504	883	1,413	1,321	48	632	17	611	433	103
'21년	온라인	484	193	21	1	29	592	86	217	317	5	110	20	146	38	70
	오프 라인	2,403	494	269	22	37	330	822	1,440	1,699	19	496	31	515	356	120
'22년	온라인	419	213	65	9	12	388	147	257	489	29	196	11	139	79	38
	오프 라인	2,330	583	329	41	49	266	1,093	1,479	2,114	91	552	24	485	491	221
'23년	온라인	375	185	45	13	1	272	134	293	357	24	142	3	145	49	57
	오프 라인	3,111	928	322	21	62	246	1,429	1,825	2,328	90	714	51	543	576	169
'24년 8월	온라인	279	154	39	1	22	135	118	216	243	17	120	18	116	18	69
	오프 라인	1,814	474	223	25	18	152	688	1,256	2,076	35	810	34	429	319	161

자료: 고용노동부